

**2021년도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 예산집행지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표본감시 관련부서 연락처

기관 및 부서	업무	연락처(043-719)
감염병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감시 예산 총괄운영 인플루엔자 임상, 수족구병,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안과감염병 	7142, 7144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생충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7165
에이즈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개감염병 	7318, 7323
세균분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균성 장관감염증 병원체 	8115
바이러스분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 병원체 	8195
신중병원체분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루엔자 병원체 	8149

2021년 집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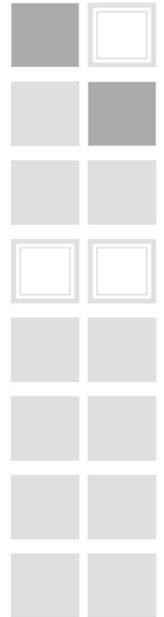
2021년	2017년	개정사유
● C형간염 삭제	● C형간염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3만원 지급	● '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및 전수감시 전환
●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분기별 예산 교부	● 월별, 반기별 자율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지급	● 표본감시기관 폐업·신 지정 및 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집행점검 모니터링(매월 1회 이상)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2항 신설
● 보건환경연구원 진단시약, 재료비 항목 삭제	-	● '20년 진단시약비 내역사업 이관 (감염병진단분석국)
● 인건비 1,600만원/년/1명	● 인건비 1,500만원/년/1명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비 부담
● 관련 법령, 표본감시 감염병 및 지정기준 추가, 수행체계 수정		● '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 국고보조금 수정	-	●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현행화

목 차

I. 일반지침	1
1. 표본감시사업 개요	2
가. 사업목적	2
나. 사업운영	2
다. 표본감시병 및 지정기준	4
라. 사업수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5
II. 사업운영관련 법규 및 예산관련 사항	6
1. 사업운영관련 법규	7
2. 지원내용	7
가. 지원기관 및 보조율	7
나. 지원내용	7
3. 예산의 집행 및 정산	7
가. 예산 집행의 원칙	7
나. 보조금 사업 수행	8
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	9
라. 예산의 정산	9
마. 부정수급방지 대책	10
4. 영수증 및 증빙서류	11
III. 예산 항목별 설명	12
1. 항목별 집행사항	13
2.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4
3. 인건비	15

Chapter I

일반지침



4. 일반수용비 15

5. 여비 16

6. 업무추진비 17

IV. 기관별 세부사항 18

1.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19

 가.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19

 나. 시·도(시·군·구) 운영비 19

 다. 인건비 19

2. 보건환경연구원 20

 가. 인건비 20

3. 표본감시기관 20

 가. 운영비 등 집행 20

붙임 1. 지자체보조 기관별 세부 지원 내역 21

1 표본감시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
- (목적) 감염병 발생수준, 발생경향의 변동양상(유행 징후 조기 감지) 및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하여 유행에 대비·대응
- (대상 감염병) 제4급감염병(23종(세분류 60종))
- 관련근거
 -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사업운영

- 표본감시기관 지정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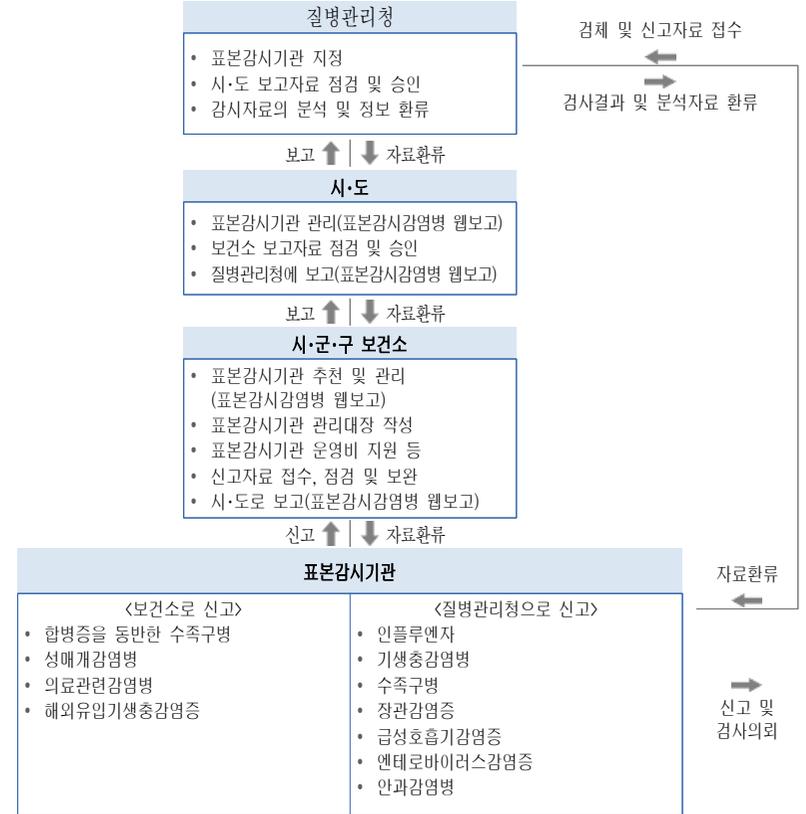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다. 표본감시 감염병 및 지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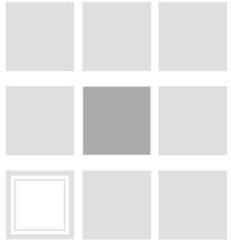
(2020.1월 기준)

감염병명	세부 종류	감시구분	지정기준 내용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임상	•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급 의료기관 • 공공병원
		병원체	• 임상감시 표본감시 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성매개감염병 (7종)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임상	• 보건소 •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시·군·구 인구 10만 명당 1개소 * 인구가 10만 미만 시군은 보건소만 지정 • 공공병원
기생충감염병 (6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임상	• 보건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 공공병원
수족구병	수족구병	임상	• 소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인플루엔자 임상감시기관과 동일 • 공공병원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임상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표본감시기관
의료관련감염병 (4종)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임상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포함) •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공공병원으로서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사도 추천으로 지정)
장관감염증 (20종)	세균성 장관감염증(11종)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감염증(ETEC), 장침습성대장균감염증(EIEC), 장병원성대장균감염증(EPEC), 캄필로박터균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감염증, 바실루스세레우스균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감염증, 리스테리아모노시이트체네스 감염증	임상	• 상급종합병원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공공병원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5종)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원충성장관감염증(4종) 이질마메바감염증, 람블편모충감염증, 작은와포자충감염증, 원포자충감염증	병원체	•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 참여의사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급성호흡기 감염증 (9종)	세균성 급성호흡기 감염증(2종)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7종)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상	• 상급종합병원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공공병원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사카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약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푼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병원체	•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11종)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사카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약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푼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임상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엔테로 바이러스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임상	• 상급종합병원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공공병원
		병원체	•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보완 감시	안과 감염병	임상	• 안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라. 사업수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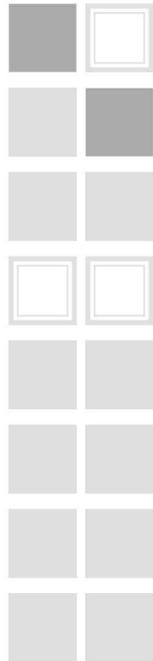


※ 신고방법: 전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입원환자 중 해당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수를 표본감시감염병웹신고(<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청으로 또는 보건소로 신고



Chapter II

사업운영관련 법규 및 예산관련 사항



1 사업운영관련 법규

- 사업의 계획·수행과 예산 집행·정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근거에 의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20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 지원내용

가. 지원기관 및 보조율

- 지원기관: 17개 시·도 (시·군·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 회계구분: 일반회계
- 보조구분: 경상보조
- 보조율: 국비 50%
- 예산과목: 감염병예방관리_자치단체이전(4800-4838-303-330) 자치단체경상보조

나. 지원내용

-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720백만원
 - ※ 공공병원은 지원비 제외: 실폐괄 지불제도에 따른 조치

3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가. 예산 집행의 원칙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제41조(벌칙)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 교부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표본감시기관에 분기별 교부 및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 인건비, 회의수당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그 외 예산의 집행은 기관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카드의 사용을 자제함
- 보조금 집행점검 모니터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 매월 1회 이상 집행점검 실시 및 다음달 15일 이내 완료

나. 보조금 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

-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40조 내지 제41조(벌칙)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예산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마. 부정수급방지 대책

- 대상: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모든 재정사업
- 방지대책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준수
 - 표본감시기관 지정 시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추천 및 관리
 - 부정수급 책임 처벌 강화
 - 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지급 중단 등의 조치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교부통지 실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벌칙)
 - 보조사업 집행 점검 및 투명성·효율성 강화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목적대로 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바. 사업 일정

- (1월)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교부(1차, 1/2)
- (3월)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공문, e나라 도움)
- (7월)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교부(2차, 2/2)
- (9~10월) 차년도 표본감시기관 수요조사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조사
- (12월) 차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4 영수증 및 증빙서류

가. 영수증 관리

- 보조금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
- 집행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집행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법인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부서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나. 증빙서류

-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
 - 지출요청서에 결제자란이 포함되어야 함
 - ※ 예시입금내역, 해당 공문,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등
- 시외교통비를 집행할 경우 공문 또는 출장복명서(일시, 장소, 내용 등) 및 해당 영수증(기차표, 버스표, 톨게이트영수증, 당일 주유비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함

-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해당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는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지침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법하게 집행하시고, 교부금 부정 수급 및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Chapter III

예산 항목별 설명

1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예산 항목별 설명 및 집행사항>

항목	산정기준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 표본감시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홍보물품 지급비 또는 회의수당 * 감염병별 지원금액을 지급: 월 2만원~14만원

항목	산정기준	
인건비	· 법정감염병 감시 및 검사 보조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부담금 등	
일반 수용비	회의참석비	·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 수당
	자료제작 및 인쇄비	· 회의 및 교육자료(소책자, 슬라이드 등)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복사·인쇄 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비품) 물품 구입의 비용
	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여비	국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내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업무추진비	· 회의, 교육, 간담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등 비용	

- 본예산은 사업계획서 또는 확정내시 항목의 금액(붙임 1)의 30%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30%이상일 경우 질병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함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함

2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가. 적용범위

-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최우선 배정
 - 표본감시기관 운영 지원비 또는 홍보물 또는 회의수당으로 집행
 - 운영비 지원 형태의 경우: 반드시 표본감시기관 대표계좌로 지급
 - 회의수당 형태의 경우: 반드시 회의참석자의 계좌로 지급
 - 홍보물 형태의 경우: 제공물품, 수령자 서명 등 증빙서류 보관

구 분		월지원금	구 분	월지원금
인플루엔자	입상	11만원	성매개감염병	3만원
	입상+수족구	12만원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3만원
	인플(실험실)	14만원	급성호흡기감염증	2만원
급성설사질환(실험실)		14만원	장관감염증	2만원
기생충감염증		3만원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만원
코로나19 실험실감시		7만원	안과감염병	3만원

- * 공공병원은 운영비 지원 제외
- *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과 2015.1.1.부터 통합 운영되어 별도 지원비 없음

- 시·도 (시·군·구) 운영비
 - 표본감시기관 교육 또는 간담회, 리플릿 등 감염병 교육·홍보경비
 - 표본감시기관이 소속된 시·군·구 보건소에 예산 배정 가능
 - ※ 연 1회 이상 표본감시기관과 교육 또는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

나. 지급기준

- 표본감시기관 운영 지원비는 반드시 기관 대표 통장으로 입금
 - ※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원장명의 계좌가능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지급 관련 공문, 통장입금증 등

3 인건비

가. 적용범위

- 법정감염병 감시 및 검사보조 인력에 대한 급여 보조
 - 인건비: 1명에 한하며, 최고 1,600만원/년(국비 기준) 초과할 수 없음(다만, 추가비용을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 최고 금액(1,6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원수 조정가능

나. 지급기준

- 인건비는 당사자의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인건비 지급 관련 공문, 통장입금증 등

4 일반수용비

가. 적용범위

가-1. 회의 참석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회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2. 자료 제작 및 인쇄비

- 표본감시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회의자료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소책자 등 제작·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3. 사무용품 등 구입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용지, 사무용품 등 소요되는 비용
 -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

가-4. 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안내 및 관련 홍보물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기념품, 리플릿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나.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사용 영수증 등
- 지급명세서(방명록_성명, 소속, 직급, 생년월일, 계좌번호, 금액, 서명 등), 구매 및 제작관련 2개 이상 견적서, 물품사양서,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홍보물품 인수증 등

※ 단, 계약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5 여비

가. 적용범위

- 표본감시업무와 관련된 국내여비에 한함

가-1. 국내여비

- 관련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나.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법인(개인)카드 사용영수증 등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 출장복명서 등

6 업무추진비

가.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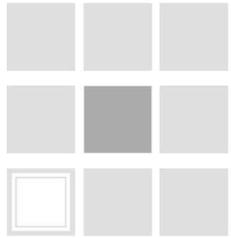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회의, 교육, 워크숍 등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
 - 행사 진행관련 인력에 대한 숙박비, 식비는 여비에서 집행

나. 지급기준

- 회의 등 진행비는 은행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회의 및 교육 경비의 집행 기준: 지자체 예산집행 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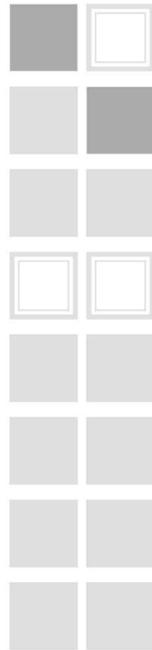
다.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등
- 관련 공문(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참석자 방명록, 세금계산서 등



Chapter IV

기관별 세부집행사항



1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가. 표본감시기관 지원비 집행

-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수에 맞게 지원비 또는 홍보물 또는 회의수당지급
- 각 표본감시기관별이 아닌 지정 감염병수를 기준으로 운영비 산정하여 지급
 - ※ 예: A기관이 인플루엔자 임상과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 시 월 25만원(임상 11만원/월, 실험실감시 14만원/월)
- 운영비는 분기별 지급. 단, 폐업 또는 재지정 시, 선 지급된 지원예산은 환수해야 함
 - ※ 미집행 및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운영비 지원 형태의 경우: 반드시 표본감시기관의 대표계좌로 지급
 - 회의수당 형태의 경우: 반드시 회의참석자의 계좌로 지급
 - 홍보물 지원 형태의 경우: 제공물품, 수령자 서명 등 증빙서류 보관

나. 시·도 (시·군·구) 운영비

- 표본감시기관 간담회, 리플릿 등 감염병 교육·홍보경비
 - ※ 연 1회 이상 표본감시기관과 교육 또는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다. 인건비

- 인력의 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된 인력의 인사권은 채용기관에 있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함
 - 인건비: 1명에 한하며, 최고 1,600만원/년(국비기준) 초과할 수 없음(다만, 추가비용을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해야 함

- 최고 금액(1,6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원수 조정가능
- 사업기관은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관리하며, 예상되는 문제발생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2 보건환경연구원

- 가. 인건비
- 인력의 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된 인력의 인사권은 채용기관에 있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함
 - 인건비: 1명에 한하며, 최고 1,600만원/년(국비 기준) 초과할 수 없음(다만, 추가비용을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 최고 금액(1,6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원수 조정가능
 - 사업기관은 채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관리하며, 예상되는 문제발생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3 표본감시기관

- 가. 운영비 등 집행
- 감시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 가능

붙임 1 주요감염병표본감시 지자체보조 기관별 세부 지원 내역

○ (경상보조) 720백만원

국비50% (단위:원)

구분	경상보조				
	합계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인건비	표본기관 운영지원비	시도 운영비	인건비
총계	698,000,000	93,160,000	330,660,000	79,000,000	195,180,000
서울	90,340,000	15,000,000	56,640,000	7,000,000	11,700,000
부산	51,540,000	12,160,000	22,380,000	5,000,000	12,000,000
대구	39,480,000	-	18,480,000	5,000,000	16,000,000
인천	54,660,000	14,000,000	21,660,000	5,000,000	14,000,000
광주	27,960,000	-	12,660,000	4,000,000	11,300,000
대전	30,540,000	-	12,540,000	4,000,000	14,000,000
울산	27,880,000	-	8,880,000	4,000,000	15,000,000
세종	14,940,000	11,000,000	2,940,000	1,000,000	-
경기	82,940,000	-	62,940,000	7,000,000	13,000,000
강원	31,040,000	-	11,040,000	5,000,000	15,000,000
충북	29,760,000	-	11,760,000	4,000,000	14,000,000
충남	38,920,000	13,000,000	10,920,000	4,000,000	11,000,000
전북	33,100,000	-	15,300,000	5,000,000	12,800,000
전남	41,420,000	14,000,000	12,420,000	5,000,000	10,000,000
경북	34,780,000	-	18,780,000	5,000,000	11,000,000
경남	40,260,000	-	20,880,000	5,000,000	14,380,000
제주	28,440,000	14,000,000	10,440,000	4,000,000	-
미통지역	22,000,000	-	22,000,000	-	-

※ 미통지역: 코로나19 실험실 감시 표본기관 운영지원비 지원